중소기업이 일어야 할 고용노동지원제도

일러두기

- 1. 동 책자는 2020년도 12월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지원 내용 위주로 되어 있으며,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내용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2. 각종 지원사업은 연초 또는 수시공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할 제도를 사전에 파악, 수시로 취급기관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3. 주요 고용노동지원제도 관련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중소벤처기업부(www.smba.go.kr)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www.bizinfo.go.kr)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www.work.go.kr)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고용 지원

1. 고용창출 지원	
정책자금 융자 ·····	10
세액공제 및 세무조사 유예 ·····	11
금융지원	13
판로지원 관련 가점 부여	17
	18
2. 인력채용 및 재취업 지원	
능력중심 채용 지원	20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	21
고용창출장려금(총괄)	26
산업기능요원제도	28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29
3. 고용안정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30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31
고용유지지원금	33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34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35
실업급여제도	37
자영업자 실업급여제도	40
국민취업지원제도	41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44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45
체당금 지원 ·····	46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47
직업훈련지원	48
일자리 안정자금	5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54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56

A 지어나 크레비니 되어
시인무터 개발 시위
/

1.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58
유급휴가 훈련지원 ·····	60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핵심직무 향상과정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65
2. 재직근로자 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	66
※ 주요 인력양성 훈련기관 ······	
Ⅲ 복지 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	70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7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72
신용보증지원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 문화예술제 ·····	78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79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80
외국인근로자 지원 ·····	82
IV 고용환경 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84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88
산업안전 지원 ·····	90
서비스재해예방	
보건분야 민간위탁사업	99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건강 디!	딤돌 사업) … 100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운영 ·····	102

V	전문인력·산학협력
	1. 전문인력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
	2. 산학협력 107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107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109 기술사관 육성사업 110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111
VI	청년 고용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14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 · 115 청년고용증대세제 1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17 일학습병행제 118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119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120
VII	여성·중장년·장애인 고용 지원
	1. 여성 고용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근로자 지원)····· 12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제도(사업주 지원) 127 직장어린이집 지원······ 129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사업 130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환경개선···· 131 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제혜택 13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33 여성 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134
	2. 중장년 고용 지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자금융자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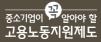
3. 장애인 고용 지원	
고용장려금제도	140
	141
	142
고용관리 비용지원	143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제도	144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제	1도145

<u>6</u> Z

고용 지원

- 1. 고용창출 지원
- 2. 인력채용 및 재취업 지원
- 3. 고용안정 지원

KBIZ



고용창출 지원

• 경제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자금·세제 및 판로·수출 확대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기업 격려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융지

개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융자한도 우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
- · 신청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 요령, 평가 착 안사항 등을 1:1 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 · 운용
- · 사후관리: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별도 안 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 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전략산업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 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내용및기간

지원수준 및 한도

정책자금 융자지원시 융자한도 배제

(융자잔액 한도) 수도권 60억원, 비수도권 70억원

융자결정

지원절차 사전상담 및 온라인 용자신형 중소기업 → 중진공 중소기업 → 중진공 중소기업 → 중진공 중조기업 → 중진공 중조기업 → 중조기업 중진공 → 중소기업 중진공 → 중소기업

신청결과 통부 및 정식 전수

67

온라인 자가진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세액공제 및 세무조사 유예

개요

I. 고용 지원

• 고용창출 기업에 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 정부 세법개정안 통과 시 공제액 등 세부내용 변동될 예정 (관련 내용 「WII.사업주가 알아야할 고용노동제도」참조)

지원내용

구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지원 대상 및 요건	17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따른 투자시 해당년도 상시근로자 수 가 전년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고용 감소시: 기본 공제	• 전년 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 여관, 주점 등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일 것
지원 수준 및 한도	• 기본공제 : 0~3% * 중소기업 : 3% • 추가공제 : 3~8% ※추가공제 한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000만원~2,000만원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 1,500만원 • 마이스터고 졸업생 : 2,000만원 • 기타: 1,000만원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 청년 등 외 인원 증가 :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 *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75%	• 정규직 전환시 1인당1,000만원 세액공제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
지원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 시청서* 및 공제세액계사서 제출		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c)

절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 신청서만 제출

<u>10</u>

금융지원

|고용창출기업 보증|

개요

• 고용창출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지원

지원내용

ILIO				
구분	대상기업	보증료		
고용창출 우수기업 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0.1~0.3% p 차감		
고용창출 특례보증	다음의 중소기업으로서 보증신청 점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이내 또는 향후 6개월이내신규고용청출(예정)기업에신규고용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1인당 3천만원, 청년인력 4천만원, 전문인 력·장애인 5천만원) • 핵신형 중소기업 • 개절형기업 • 고용의 질 우수기업 • 신보 잡클라우드를 통한 보증신청기업 • 워크넷을 활용한 보증신청기업(고용노동부운용) • 유망서비스 부문 기업 • 통화서비스 부문 기업	0.7% 고정보증료율		

구분	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② 특성화고 졸업자 복직 세액공제	③ 일자리창출 기업 세무조사 유예
지원 대상 및 요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 유지하는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감소하지않을 것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 연도 비해 감소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자를 고용후 군병역 이행후 1년 이내 복직시킨 중소기업	•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수 2~4%(최소 1명) 이상 증 가 계획이 있는 전년 과 세연도 기준 수입금액 1,500억원미만중소기업
지원 수준 및 한도	• 중소기업 손금산입액 1인당 임금 감소분× 상시근로자수 × 50% • 근로자 소득공제액 임금감소분 × 50% (한도 1,000만원)	• 인건비 세액공제 복직일 이후 2년 이내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납세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지원 절차	• 소득공제신청서 제출	•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 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의해유예신청시 요건 검토 후 즉시 결과 통지



·①, ②: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044-215-4110)

•③: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044-204-2308)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48)

| 가젤형기업 우대보증 |

개요

• 고성장기업의 지속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지원

지원내용

구분	창업형 예비 가젤기업	가젤 기업	
업력	당기결산일 기준 2년초과 (창업 후 5년 이내)	당기결산일 기준 3년초과 (창업 후 5년 이내)	
당기매출액	4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선정요건	최근 2개년 연속 -(고용창출형) 고용 20% 증가 -(성장촉진형) 매출 20% 증가	최근 3개년 연속 -(고용창출형) 고용 20% 증가 -(성장촉진형) 매출 20% 증가	
유효기간	선정후 1년	선정 후 3년	
지원내용	보증료 0.3% p 차감	보증료 0.4% p 차감	

|고용의질 우수기업 |

개요

• 우수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원대상

- 비상장 중소기업
- 설립 후 공모 마감일 기준 5년 초과
- 당기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당기 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 당기말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큰 기업
- 다만, 개인기업은 자기자본 전액잠식이 아닌 기업
- 공모 마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기업
- 다만,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감소한 기업 제외

지원내용

구분	좋은일자리기업	최고일자리기업
보증료율	0.4% p 차감	0.5% p 차감
보증비율	90%	
비금융지원	− 전문 경영컨설팅 및 Job-Matching 서비스 제공 − 유동화회사보증 취급시 편입・금리 우대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지원내용

구분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과거 1년전 대비 상시근로자 20% 이상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장애인,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일자리안정자금수혜 기업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 기업	
지원내용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우대사항	• 보증비율 90% ~ 95% • 보증료 0.3% ~ 0.4% 감면	

판로지원 관련 가점 부여

개요

• 고용창출 등 기업에 물품구매·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가점 부여

지원내용

구분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	(조달청)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가점 부여	(국방부)용역적격심사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
심사 항목	· 고도인증 · 녹색· 일반인증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고용창출 · 청년고용창출 · 청년고용창출 · 공동수급체 · 중소(제조)기업 · 정책지원 · 납품지연 · 불공정하도급거래 · 부정당업자제재 · 고용개선조치미이행 · 하자조치불이행	· 고도인증 · 녹색·일반인증 · 고동수급체 지원 및 영세 기업지원 · 여성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고용창출 · 청년고용창출 · 혁신형중소기업 · 정책지원 · 남품지연 · 불공정하도급거래 · 부정당업자제재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자조치 불이행 ·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 고용형태	· 품질하자 · 납품지연 · 부정당업자제재 · 서비스 우수 · 혁신형 중소기업 · 노시협력 우수 · 비상대비 중점관리 · 장애인 기업 · 가족친화 · 고용창출 · 여성기업 지원 등 · 사회적 기업 · 모범납세
지원수준 및 한도	· 배점한도 +3~-2점	· 배점한도 +3~-2점	· 배점한도 +1.5 ~ -3점
지원절차	최저가 투찰 입찰자 순 검토 통해 중합평점 85점 이상자를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 자를 낙찰자로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용역별 적격통과 점수 이상자를 낙찰자 로 결정



- ·조달청 구매총괄과(042-724-7464)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02-748-5367)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사항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시 지원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직무개발형	직무분석 등을 통한 시간제 직무를 개발하여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추가 고용		
직무분할형	평일 8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분할하여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추가 고용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지 1명당 월 60만 원(우선지원 대상은 8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50%를 1년기간내에서지급	
일·가정양립형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시간제 근로자 추가 고용		
기타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		



·고용노동부(1350)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선정시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인 기관 ※단,부문별 HRM 240점 미만, HRD 360점 미만기관은 인중심의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연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국내 및 해외연수) 교육 지원 인증기관 당수사례 홍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사업주부문' 가점 부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면제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052-714-8217)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선정심사시우대

지원	대상	· 우수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大賞: '18-'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유효기간 : 우수기업·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내용 :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 또는 금융상 우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5)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 지원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용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자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연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67

·안전보건공단(1644-4544)

<u>19</u>

02

I. 고용 지원

인력채용 및 재취업 지원

능력중심 채용 지원

개요

- 기업이 해당직무 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NCS*를 활용 하여 채용공고, 입사지원서 등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지원대상

• 직무중심 채용을 원하는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지원내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기업의 직무 분석 및 공정한 채용 평가도구 개발 지원

직무분석 및 NCS Mapping	기관 인재상, 채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검토
채용도구 개발	직무와 관련된 서류·필기·면접 등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 개발
평가척도 개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필수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도출 및 평가척도표 개발

67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활용팀(052-714-8770) •NCS 종합포털사이트: www.ncs.go.kr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사업개요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안식휴가 부여 등

지원요건

-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②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③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④ 일자리 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지원내용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근로자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 [®]		조기단축기업 ^②	노선버스업종 ³
ニエハナ		1명 당, 1개월, 지	[원금액, 지원기간	
500명 초과	60만원	^긜 , 1년	법정시행일까지	
200 5000	제조업	80만원, 2년	60만원 / 이후	60만원, 1년
300~500명	기타업종	60만원, 1년	40만원, 2년	
	제조업	80만원, 2년	법정시행일까지	
300명 미만	기타업종	80만원, 1년	100만원 / 이후 80만원 (제조업 및 특례 제외 업종은 최소 2년, 기타 업종은 최소 1년)	80만원, 1년

- ① 개정 근로기준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 ② 조기단축기업이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③ 노선버스업종이 조기단축할 경우 조기단축기업의 예에 따라 지원

- (임금감소분 보전)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최대 40만원, 1~2년 지원
-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가 한도
- *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의 경우 20명 까지)

근로자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 [®]	조기단축기업 [©]	노선버스업종 ³	
근도시구	최대지원기간				
500명 초과	-				
300~500명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2년	
	기타업종	1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제조업 및		
300명 미만	기타업종	1년	특례제외 업종은 최소 2년, 기타업종은 최소 1년	2년	

- ① 개정 근로기준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 ② 조기단축기업이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 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 ③ 노선버스업종이 조기 단축할 경우 조기단축기업의 예에 따라 지원

·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구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 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비제조업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제조업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가 한도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 지원요건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대상 시설 등〉

투자종류	지원금의 용도
설비 투자비	-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시설 건립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 매입비 제함
시설 매입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 매입비 제함
시설 임차비	- 일자리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월세는 제외)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 소유·매입·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지원내용

- (설비투자 융자지원)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증가근로자 1인당 1억원 지원
- 상환조건 :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지원절차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 신청 방식

근로시간 단축 및	3개월 후 장려금	요건 충족 여부	장려금 지급 및
근로자 채용	신청서 제출	판단	지도 점검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②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공모 방식

사업주	심사 및	제도도입 및	장려금	장려금 지급 및
계획서 제출	승인	사업 시행	신청서 제출	지도점검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임금보전은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 |

개요

•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 구성·운영하여, '20.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 ~ 299인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부 지원 안내 연계 및 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 등 안내·연계
- * 주 52시간 초과 인원, 주 52시간 초과 직군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지원제도 제시
-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 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전문가 지원단) 연계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심도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연계

신청방법

• 현장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동시간 단축 페이지(www.moel.go.kr/52-hour.do) 또는 민원마당(서식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처리절차

01	02	03	04
신청(기업)	기업현황진단 (지원단)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 (지원단)	지원제도 연계 (지원단)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

개요

-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단축한 중소기업 사업주 (공모방식)에게 노무·관리비용(유연근로제 도입, 업무효율화 등 소요비용) 등 지원 차원에서 장려금 지급
- * 장시간 유발형 교대제(격일제, 주야2교대제 등) 개선, 직무특성에 맞는 유연근로 제도 도입,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업무효율화, 신규채용 등

지원대상및내용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계획(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관리 강화, 업무 효율화 등)을 제출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00인 미만 기업 *(지원규모) '20년 500개소
- 지원내용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 6개월 지원

지원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모(1년에 3~4회)를 통해 신청받은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 △단축 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주 노력 정도 및 소요비용 △기업규모 △단축 시간 및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노동시간 단축 계획 및 노동시간 단축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지원금 지원

고용창출장려금(총괄)

사업목적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년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내용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① 교대제 도입 확대, ② 주근로시간단축제, ③ 실근로시간단축제 ④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수 증가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 여야 함	[설비투자비 융재]		 7.근로자수 1인당]) 1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복귀 제조업으로 지정일 후 3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 업과 중견기업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유형 우선지원 중견기업	는 1인당, 총 2년 3개월단위 180만원 90만원	지원 총지원액 720만원 360만원
신중년 적합 작무 고용 지원	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②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③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④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인건비] 신규 고용 근 유형 우선지원 중건기업	로자수 1인당 3개월단위 240만원 120만원	총지원액 960만원 48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 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 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 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 초진 지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 **외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 장려금 족 중 여성, 도서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

> **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 는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상자에 포함

지원 제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4 촌 이내의 혈족·인척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구분	6개월단위	총지원액	
우선지원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사업추진체계



- ※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생략
- ※ ⑥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만 해당 됨

27



·고용노동부(1350)

산업기능요워제도

개요

•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중소기업 등)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 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 (다만, 한 해에 현역T/O는 동일법인 내 1개 공장 (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19년 개정)
- (기존)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신청요건

	H 01	0.71
분야		요건
공업	제조업	※ 아래시항 모두 충족 ①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 단,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취업 협약(학교-학생-업체) 한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9 이상
ОН	정보처리 관련업	② 제조·사업시설이 타기업과 물리적으로 분리 ③ 정보처리 분야는 S/W 개발 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광업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중소·중견기업 법인)
에너지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소·중견기업 법인)

신청방법

• 온라인(sanhakin.smba.go.kr)으로 신청·접수 후, 신청서 등 증빙서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송부



·중소기업진흥공단(1357)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요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내용

구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동포 : 방문취업제(H-2)
허용 기업	중소제조업(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 (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33개 업종), 중소제조업(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 한국어 시험 합격자	연고 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시험, 전산추첨)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한국어시험·구직자명부 작성 (송출국←인력공단) →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고용부) → 근로계약(사용자←외국인근로자) → 사증발급 및 입국(법무부) →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사증발급 및 입국(법무부) →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인력공단, 고용부) → 사업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고용부) → 근로계약(자율구직 또는 취업알선) → 근로・취업개시 신고(고용부, 법무부)
기타	외국인근로자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간 이동 제한은 원칙적 금지,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 간 2회 가능 (휴·폐업등사업주 귀책사유는 불포함)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eps.hrdkorea.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I. 고용 지원

고용안정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개요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액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 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임금증가액: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 80%를 월 최대 60만원 지원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 지원기간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c)

- ·고용노동부(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가·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 상계획 등을 심시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지원요건

무급휴업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명 이상 : 100명 이상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기간 :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후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

지원절차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7	용유지조치	심사	승인	고용	지원금	사실관계
	획서 제출	위원회	또는	유지조치	신청	확인 후
	고용센터에)	개최	불승인	실시	(고용센터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 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 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인력재배 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지원수준

구분	지원수준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휴직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므금 ㅎ어.ㅎ지	신사의원하가 그로자 평균인근 50%(1일 6 6마원)번의 내에서 지원근 결정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지원기간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T	0	귰	4
^	75	Æ	^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시업주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매월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에)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67

·고용노동부(1350)

6.9

·고용노동부(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개요

•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 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지방노동관서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공모형 사업)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합의
-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기간 및 지원 종료 후 1개월 간 고용 유지)
-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지원내용

- (지원금액) 임금 감소분의 50%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지원
-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지원절차(공모사업)



6

·고용노동부 (1350)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개요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 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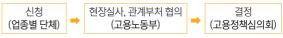
지정요건

-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 있는 업종으로서 다음 요건 을 충족
-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 업종 평균보다 5% 낮은 경우
- 2) 당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직전 1년 전보다 2배 이상 감소한 경우
- 3) 해당업종 실업급여 신청자가 이전 1년간 신청자 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 다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업종의 경기동향, 주요기업의 재무 상황 및 신용위험도, 휴·폐업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가능

지원대상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지정절차



지원내용

7 8	EHJOTION조	이바이조
구분	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수당의 90% 수준	· 휴업수당의 67% 수준
(기업 지원)	· 1일 한도 7만원	· 1일 한도 6 만6천원
무급휴직 지원 (근로자 지원)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 휴업(1개월) ·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기간 최대 270일*	· 무급휴직 실시(9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 휴업(3개월) ·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기간 최대 180일
고용·산재보험료 혜택	· 6개월 연장	· 30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납부기한 연장
건강보험료 혜택	· 연체금 징수 예외 · 체납처분 예외	·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 30% 감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 2천만원	· 1천만원

^{*} 단, 180일 초과한 기간은 월50만원 정액 지원 (일반업종 대비 월50만원×3개월 추가 지원)

지원기간

•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실업급여제도

개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 기본요건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일용근로자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신청기한
- 실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 수급기간 경과 시 지급이 불가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하여야 함

실업급여

7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자취업활동)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 도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왕은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19.10.1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최고 : 1일 66,000원 - 최저 : 최저임금액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19.10.1 이전은 퇴직당 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소정급여일수] (단위: 일)		
		※자발적이지또는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연령 지보험 기간 50세 이상 및 장애인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1년미만 120일 120일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 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는 로ト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는 로타실직전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 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상병급여		실업신고 한 이후 질병·부상으로 취업이불가능하여실업의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경우는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구직급여액과 같은 금액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 연장	실업급여 수급자로 연령·경력 등 고려 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 (최대 2년)동안 구직급여의 100% 연장 지급		
연장 급여	개별 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70% 연장 지급		
	특별 연장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부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실업급여수급이 종료된자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70% 연장 지급		

갼	지원요건	지원내용
조기재취업 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 된 경우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	• 구직활동을 한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한 때	

- ·고용노동부(1350)
- ·고용보험홈페이지 : www.ei.go.kr ·워크넷 홈페이지 : www.work.go.kr

<u>38</u> 39

자영업자 실업급여제도

개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요건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
- 직업능력개발훈련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 간 기준보수의 50% 지급
- 지급수준 : 선택한 기준보수(182만원~338만원)의 50%(월91만원 ~ 169만원) (이직일 2019, 10, 1, 이저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평생내일배움카드제(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기간 1년 이상인 연매 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 평생내일배움카드제 :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 일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대상임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 ①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③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
- II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 I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 (청년은 소득수준 무관)에게 지원

l 유형	∥유형
	· (저소특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총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이하)	

※ 참고

중위소독 50%(1인가구 913,916원, 4인가구 2,438,145원) 중위소독 60%(1인가구 1,096,699원, 4인가구 2,925,774원) 중위소독 100%(1인가구 1,827,831원, 4인가구 4,876,290원) 중위소독 120%(1인가구 2,193,397원, 4인가구 5,851,548원)

63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1350)

지원내용

- | 유형과 ||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이후 상호 혐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희망·취업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 * ①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 취업 · 진로상담 프로그램
-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③ 이력서 작성 · 면접기법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 ④맞춤형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 ⑤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 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참여자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방법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1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지원절차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1 신청 - '21.1.1.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신청 - 온라인 사전신청은 '20.12.28부터 가능



수급자격 결정 ·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고용노동부 (1350)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개요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 공공기관은 제외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최대 90% 지원(고용노동부 90%로 확대 추진중)
-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기지원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구미여근고다

지원결정 통지 및 보험료 지원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지원수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까지 지원
 - ㆍ기준보수 1~7등급 30% 지원

지원절차

지원신청	지원대상확인	납부실적확인	고용보험료지원
소상공인	공단	공단	공단
→ 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체당금 지원

개요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제고

지급요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요건	내용	
기업 도산	재판상도산 파산 선고,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사실상도산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 -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	
사업주	산재법 적용대상으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내 그 사업장에서 퇴직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 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신청일, 도산 등 사실 인정의 신청일	

지원내용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구분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지원절차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개요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와 취약근로자 보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된 임금의 청산 자금을 융자 지원

지원대상

- 대상 사업주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
- •근로자
- 재직중인 근로자: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퇴직근로자: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 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지원내용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7천만원 한도, 근로자 인당 6백만원 한도
- 융자방식
-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 이자율
-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3.7%, 담보제공 시 연리 2.2%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직업훈련지원

| 평생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직·휴직·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실업자·재직자(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	
유효기간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지원내용	200 ~ 3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		
유효기간	5년(5년 후 재발급 가능)		
지원내용	300 ~ 500만원		

지원대상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지원내용

- 개인당 300 ~ 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기간은 5년(재발급 가능)
- * 취업성공 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 훈련참여자는 훈련비 일부를 자부담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취업성공 패키지1 유형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 ~ 55% 차등 부과
- * 자부담 5%p 추가 부과
- :①일반사무 ②회계 ③요양보호사 ④음식조리 ⑤공예 ⑥바리스타 ⑦제과제빵 ⑧이·미용 ⑨문화콘텐츠제작 ⑩간호조무사

지원절차

카드 발급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 통해 신청 훈련과정 수강신청*

고용센터 상담 또는 HRD-NET 통해 신청 훈련과정 수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 통해 신청 가능

(c.)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www.hrd.go.kr)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개요

•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 양성 필요성이 있는 직종의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을 위해 구직자에게 교육후력을 제공

지원대상

-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로서 연간 매출액 15,000만 원 미만인 사람 또는 신용 회복 위원회의 신용 회복 지 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원요건을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소 독액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상급학교 비 지학 예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 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저인 사람
-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계좌발 급신청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10일 이상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직자 카드 발급 가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단시간근로자 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등

지원내용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위탁받은 훈련 기관의 적합훈련과정을 성실하게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 원)을 지원

• 지급 대상: 전문기술과정(기능사), 베이비부머, 여성재취업 (경력단절여성) 과정

• 지급 조건 : 해당월 출석률 80%이상(해당월 실출석일수 / 해당월 소정출석일수)

• 교통비 : 수강횟수 상관없이 지급

• 훈련장려금: 1회차 전액지급, 2회차 1/2감액 지급, 3회차 미지급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1577-7114)

| 내일이룸학교 |

개요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과정 종료 후에는 취업까지 지원하는 기관

훈련대상

-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로 직업훈련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한부모, 가출청소년 등

지원내용

- 훈련생 자립장려금 지급(출석률에 따라 월 30만원 내)
- 기숙사, 교통비 및 중식비(기숙사 미제공시 월 최대 16만원) 지원
- 특화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직업훈련교육 수료 후 취업처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

신청절차



67

・한국생산성본부 내일이룸학교(02-398-4304)・꿈드림 홈페이지: www.kdream.or.kr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개요

 장기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으로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지원대상

-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 하는 취업 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의 연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소득수준과 무관히 지원

지원내용(대부한도)

1인당 대부 한도액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모두 2,000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3,000만원 한도
월별 대부 한도액	300만원 이내
융자금리	연 1.0%(신용보증료 별도)
상환방법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신청방법(대부신청서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회원가입 필요)
 -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 ①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
 - ② 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 ③ 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 ④ 30인~300인 미만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지원수준

-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5만원
-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4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3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신청및지급방법

-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 · 우편 · 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급) 계좌로 직접 지급(매월 15일)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개요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 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며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사업주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① 인건비 지원 : 근로자 임금의 80% 한도로 월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③ 주 15~30시간 근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⑤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관리	② 간접노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 월 1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작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①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금 : 임금감소 보전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 - 주 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 주 25~35시간: 월 최고 24만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주 15~30시간으로 근로 단축 ③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기계 도구 활용 근태관리 ⑤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① 인건비 지원 : 근로자 임금의 80% 한도로 월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② 간접노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 월 1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시업장의 경우 3명) ①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금 : 임금감소 보전금 : 임금감소 보전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 - 주 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이내에 지원금 신청	: 대체인력 임금의 50%한도로 월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처리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및승인	제도도입, 사업시행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시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노동부(1350)

·온라인 신청 및 신청 서식: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55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개요

• 출산·육아·시간 선택제·병가·교육·산재 등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지원대상

• 대체인력 구인수요 사업장 및 구직자

지원내용

- 기업

맞춤인재 추천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 서비스, 장기미채용 기업은 맞춤컨설팅을 통해 원인 분석 및 집중 알선 서비스 제공

종류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내선 1번)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80% 지원 (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 구직자

무료 직무교육 및 소양 교육 실시,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 개발 상담 진행, 미취업자의 재교육 및 집중 알선과 필요시 동행 면접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 1. 사업주 지원
- 2. 재직근로자 지원



·대체인력뱅크(수도권 1577-0221, 지방권 1577-8505) 관련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민간대체인력뱅크(matchingbank.career.co.kr)



(c)

01 사업주 지원

Ⅱ.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개요

•사업주가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실시시 훈련비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요건	지원수준
훈련비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지원 상시노동자 1,000인 미만 기업 60% 지원(원격훈련 80% 지원) 상시노동자 1,000인 이상 기업 40% 지원 * 단 외국어 과정은 각수준별 지원금액의 50% 지원
유급휴가 훈련	소속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기를 부여하고 20시간 (대기업 180시간)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 (대기업 100%)
인건비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대체인력 인건비) 소정 근로시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1개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 식비 : 1일 3,300원까지 지원 • 숙식비 : 1일 14,000원까지 지원 (1개월 330천원 한도)

지원절차



59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유급휴가 훈련지원

개요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 훈련 실시 시 훈련비와 임금 지원

지원대상

-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하여 훈련 실시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 실시한 사업주
- 조선업체의 경우 자체훈련기관이 자사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 실시 가능

지원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수가 150명 미만 기업 중
-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할 것
-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것
- 그 외 기업(1년 이상 재직근로자 대상자에 한함) 중
-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지원내용

- 훈련비 : 훈련기간 동안 훈련 근로자 1인당 월 83만원 지급(훈련기관에 지급)
- 단위기간(30일) 별 최소 훈련시간(60시간) 충족 시 지급
- 훈련참여 근로자 인건비 : 최저임금 100%(중소기업은 최저임금 150%)
- 대체인력 인건비 : 최저임금액 100%
-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지급

지원절차



67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6)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개요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공동훈련센터 지원

	지원항목		지원 비율	연간 지원한도액
	운영비 및	직업훈련전담자 및 행정전담자 인건비	80%	4억원
인프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100%	
구축비	훈련시설 및 장비비		80%	15억원
	프로	그램 개발비 등	100%	1억원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100%)	협약기업이 납부한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240% 이내
훈련비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300% 이내	협약기업의 연간지원 한도액 중 약정한 재원의 총합
	전략분0	ᅣ 훈련과정 운영비	실비단가 (기준단가의 200% 이내)	사전지급 및 정산

-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방식
- **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 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원받는 방식

•운영비

항목	지원비율	지원조건
전담자 인건비	80% (단,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정부 출연 법인, 행안부장관 고시 기관, 국·공립대학교,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중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은 100% 지원)	1명 기준 4,000만원 이내 (다만, 부담금 면제 기관의 경우 1명 기준 최대 5,000만원 이내) •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총 지 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담자의 인건비를 차등 지급 • 전담자 지원인원 수는 훈련규모 에 따라 정한 기준 내에서 지원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 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 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비율이 60%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 지원 • 파견근로자는 전담자로 불인정 (직접 계약에 의한 경우만 전담자로 인정)
일반운영비	100%	

• 훈련시설·장비비

항목	내용	지원비율	지원조건
훈련 시설	강의실 실습실 등	80%	
훈련 장비	훈련과정에 필요한 장비 등	(단,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 기관, 정부 출연 법인, 행안부 장관 고시 기관, 국·공립대학 교,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은 100% 지원)	지원연도를 포함하여 총 6년 동안 컨소시엄시업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교육훈련에 활용 자체부담 20%이상 기관에서 투입

•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항목	내용	지원비율	지원조건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 직무분석 및 커리큘럼 • 교재 • 실습자료	100%	규정 제24조에 의거, 3년간 균등 분할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므로 최소 3년간 훈련 에 활용 협약기업의 훈련과정 설계에 필요한 직무 분석, 커리큘럼, 교재, 실습자료의 개발- 구매 등에 한정하여 지원

중소기업 핵심직무 향상과정 지원

개요

•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핵심훈련과정 선정, 훈련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유도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연수기간 : 3월~11월 • 연수인원 : 3,000명 • 연수일정 및 장소 : 지역별 호텔 및 시설
교육내용	• 중소기업 인적자원 활용 전략 • 중소기업 HRD 우수사례 공유 •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프로세스 수립 전략 • 최신 HRD 트렌드 및 이슈 등
참가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개요

•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하도록 학습활동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 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일학습병행제, 사업주 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거나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유형	지원조건	지원내용
학습조 활동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 중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 연계한 학습활동에 한하여 지원 - 운영기간: 8개월 이상 - 정기모임: 월 2회 이상	하습조 운영비: 운영기간 동안조당 200만원한도 (단, 우수기업은 조당 280만원 한도) - 강사비, 수강료, 교재구입비, 인쇄비, 재료비 등 CEO, 조장, 리더 교육비: 기업당 200만원 학습리더 활동수당: 월 20만원 한도 학습조장 활동수당: 월 10만원 한도 -기업이 학습리더, 조장에게 지급한 활동수당의 90% *기업부담금: 지원금액의 10% 의무 부담
우수 사례 확산 지원	•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사내 우수학습조 선정을 위한 경진대회 지원	• 학습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 사내경진대회 지원금 - 신규기업 최대 100만원 - 계속기업 최대 200만원 - 기업이 지급한 금액의 90% 지원
외부 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 컨설팅 등 외부전문가 자문지원(지도)	• 기업당 300만원한도 - 소요비용의 90% 지원 * 기업부담금 : 지원금액의 10% 의무 부담
학습 인프라 구축	• 근로자 학습활동 지원 위한 학습공간 구축 시, 소요되는 일정 구입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소요비용의 70% 지원 * 기업부담금 : 지원금액의 30% 의무 부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당해연도 상반기내
- 접수처 : 지원기업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선정: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6.7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부(052-714-8610)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052-714-8217)

02

재직근로자 지원

Ⅱ.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직·휴직·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실업자·재직자(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
유효기간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지원내용	200 ~ 3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
유효기간	5년(5년 후 재발급 가능)
지원내용	300 ~ 500만원

지원대상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지원내용

- 개인당 300 ~ 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기간은 5년(재발급 가능)
- * 취업성공 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 훈련참여자는 훈련비 일부를 자부담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취업성공 패키지1 유형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 자부담 5%p 추가 부과
- : ① 일반사무 ② 회계 ③ 요양보호사 ④ 음식조리 ⑤ 공예 ⑥ 바리스타 ⑦ 제과제빵 ⑧ 이·미용 ⑨ 문화콘텐츠 제작 ⑩ 간호조무사

지원절차

카드 발급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 통해 신청 훈련과정 수강신청*

고용센터 상담 또는 HRD-NET 통해 신청 훈련과정 수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 통해 신청 가능

주요 인력양성 훈련기관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 www.sbhrdc.re.kr

•문 의 처:중소기업인력개발원(02-2124-3435)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전국8개)

•홈페이지: www.korchamhrd.net

•문 의 처:대한상공회의소(02-6050-3916)

한국폴리텍대학(전국8개 대학, 34개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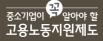
• 홈페이지: www.kopo.ac.kr

•문 의 처: 한국폴리텍대학 학사부(032-650-6642)





복지 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

개요

• 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직원 등 중소 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지원내용

- 연 1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적용
-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은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 4.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지원절차

은행방문및 상담신청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신청및 서류제출 대출심사및 승인

대출금 수량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개요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으로 주거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지원대상

대상근로자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 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 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대상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 제외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접수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개요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완화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 중소협력업체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대기업이나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둘 이상의 기업들이 각각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등 둘 이상 기업 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주주, 친족 등)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 기금법인이 중소 협력업체나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한 복지사업비 및 복지시설비의 50% 범위 내 지원 (매년 2억원 한도)
- 기업이 중소기업 기금법인에 출연한 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 지역별, 업종별 등 임의로 2개사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비용의 100% 이내 지원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과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시, 출연비용의 100%이내 지원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간 설립된 공동기금 법인(*신설) 설립 시, 출연비용의 100% 이내 지원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

사업목적

•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 등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 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게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
- 지원내용 : 사업주 설명회(6개 권역별 분기 2회 이상), 기업복지 도입지원 기본·심화·운영 컨설팅 등 수행

기업복지제도



사업추진체계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04)・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신용보증지원

개요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본인 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http://www.credit4u.or.kr)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 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 * 외국인, 제외 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2,000만원 (2020년 12월까지 융자신청서 접수 및 융자실행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3,000만원까지 보증한도 한시 상향 지원)

보증대상융자사업

-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에 따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 등

보증대상 융자사업:고용부의 근로자 대상 정책자금 융자사업

	1040 844 B 1207 - LEA 40 0 - A0 844 B				
	구분	대부대상및한도	상환기간		
재직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소액생계비는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용도: 의료비, 부모요양비, 혼례·장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한도: 1,000만원 ※ 단, 혼례비는 1,250만원, 부모요양비는 부양자 1명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은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는 200만원	• 이율 : 연 1.5% • 상환(택 1) ① 1년 거치 3년 분할 ② 1년 거치 4년 분할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보증료 : 연 0.9%		
	임금 체불 생계비	 대상: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이하,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못한자 용도: 생계비 한도: 체불임금 범위 내 1,000만원까지 	• 이율 : 연1,5% • 상환(택 1) ① 1년 거치 3년 분할 ② 1년 거치 4년 분할 • 보증료 : 연1.0%		
산 재 근 로 자	생활 안정 자금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유족, 장해 1~9급, 상병 연금 수급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용도: 의료·혼례·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 자동차구입비 한도: 1,000만원(월 200만원 이내)	• 이율 : 연 2.0% • 상환(택 1) ① 1년 거치 4년 분할 ② 2년 거치 3년 분할 ③ 3년 거치 2년 분할 • 보증료 : 연 0.7%		
직업훈련참가	전직 실업자 생계비	• 대상: 3주 이상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전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 ※ 연간소득 8,000만원 이하 실업자(부부합산) • 용도: 훈련기간 중 생계비 • 한도: 1,000만원(월 100만원 이내)	• 이율 : 연 1.0% • 상환(택 1) ① 1년 거치 3년 분할 ② 2년 거치 4년 분할		
삼 가 자	비정 규직 생계비	 대상: 3주 이상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훈련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전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 용도: 훈련기간 중 생계비 한도: 1,000만원(월 200만원 이내) 	③ 3년 거치 5년 분할 • 보증료 : 연 1.0%		

<u>74</u>

지원절차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개요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단위 휴가, 휴식 활용기회 제공

지원내용

이용대상	 주말, 성수기: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평일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등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연휴 *평일: 일 ~ 목(단, 성수기 제외) *성수기: 매년 별도 공지
이용요금	55,000원 ~ 200,000원 *1박기준-조식제외
이용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

신청절차

- ①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지원신청」 메뉴 클릭
-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 확인 → 확인(한글) 문자 전송
 - *임금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별 문자 전송되며 임금자료를 팩스 전송 (FAX: 0502-267-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 ④ 고용·산재보험 사업장의 사업주 신청(워크숍 교육 등)은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전화바람
- ⑤ 기타사항
 - 이용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주말, 성수기: 최초 선정일 전날 23시 59분까지 접수 요망 이후 접수 시 잔여객실 선정일정에 따라 처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6.7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u>76</u>

근로자 문화예술제

개요

• 근로자들에게 문화접촉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창의적 여가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술·음악·문학·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제를 매년 개최

참가대상

-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포함)
- 기타 참여가능자: 해외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근로자 및 실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자
- * 연극제 : 동일 사업장의 근로자로 이루어진 단체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참여 가능
- * 가요제: 단체팀의 경우 사업주 참여 가능(단, 사업주로만 구성 불가)
- 참여 제한자 : 기성 전문가 및 현직공무원, 각 세부분야 금상 이상 수상자는 동일분야 참가불가(타 세부분야 참가 가능)

개최분야

미술분야 회화, 서예, 공예, 사진 디자인		
	가요분야	독창, 중창, 합창
	문학분야	시·시조, 소설, 수필, 희곡·시나리오·단편드라마
	연극분야	단막극

시상내용

- 시상훈격
- 국무총리상: 상장 및 상금(700만원)
- 고용노동부장관상: 상장 및 상금(각 500만원)
- 그 밖에 각 분야별로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특별상 및 개인상 시상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개요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교 졸업 시까지학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재 인정받은 근로자 중 산재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신체장애등급 1~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선발대상	교육부장관이 고등학력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선발 우선순위 : 수혜 횟수 적은 신청자 순 선발제외 : 타 장학금 수혜자, 허위서류 제출자 등 1가구당 자녀 수 제한은 없음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급시기 매분기 학교지정 계좌로 입금		매분기 학교지정 계좌로 입금
	지급기간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단, 연도 중 장해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 단,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합계 연간지원총액 5,000,000원을 최고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 지원

·근로자문화예술제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6.9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요

• 산재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 지원, 산재근로자는 금융 기관에 별도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는 제도

지원내용

구분	신청자격	융자사유			
의료비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의료비 소요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자녀의 혼례			
장례비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산재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가족 사망으로 인한 장례			
차량 구입비	산재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산재근로자 본인·유족의 생계 및 생활 위한 차량(건설기계 포함) 구입			
주택 이전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 위자)이 주택을 이전한 경우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을 월세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1,500만원 한도내 에서 용자) ※대부사유비해당: 고시원,기숙사,비주거 용 건축물・불법건축물로 이전한경우, 주택 매매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			
사업자금	•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 조에 의해 창업점포를 지원받 고 있는자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지원이 확정되어 점포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업안정 자금	장해등급 1급부터 9급까지 결정받은 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 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장해판정자(1급~9급) 중 직업에 복귀하 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 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
 ※ 2020년 중위소득(3인기구 기준): 3,870,577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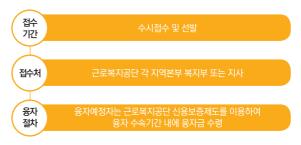
자격제한 (공통)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과거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1,000만원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1,500만원
- 연리 2%,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연 0.7%

지원절차



6.7

·근로복지공단(1588-0075)

외국인근로자 지원

개요

'한국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차별대우 및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충상담, 생활적응 서비스 등을 제공

지원대상

• 합법체류 및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 ※ 단,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상담 등에 한하여 지원

지원시설

• 한국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가리봉동) B동

- 설립주체: 고용노동부 설립,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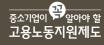
- 운영주체 :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지원내용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태권도교육, 특별교육 등	
상담 프로그램	산업현장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담과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상담	
행사지원 프로그램	공동체행사, 교육행사, 문화행사	
무료진료	작은 질병과 상해의 기본적 진료 및 치료	

IV

고용환경 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개요

•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 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 지원 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제도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것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제도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 연장근로에 따른 장려금 산정기준	
시차출퇴근제	- 시차출퇴근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재택 · 원격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 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 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원격근무제	– 재택·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지원내용

•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구분	금액	
주 1~2회 활용	주 5만원(연 260만원)	
주 3회 이상 활용	주 10만원(연 520만원)	

* 지원인원 하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홈페이지 : www.work.go.kr/jobcenter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 및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장비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등〉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 비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지원

지원내용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
-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일터혁신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

지원대상및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영역은 중소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1항)에 한하여 지원
- 일가정 양립 영역은 근로자 수 500인 미만 기업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지원범위 내 전액 정부지원
-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일 255만원, 패키지 최대 765만원 자부담
- 컨설팅 영역
- 전문
 - ① 장시간근로개선
- ⑥ 노사파트너십체계구축
- ② 장년고용안정체계구축
- ⑦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 ③ 고용문화개선
- ⑧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 ④ 임금체계개선

- ⑨ 평생학습체계구축
- ⑤ 평가체계개선
- 컨설팅 수행기간

6.9

- 사업장 기준 10주 ~ 21주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개요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사업
-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추구 하는 사업

공통사항

- 사업주체 : 자치단체
- 지원방식: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숙사, 통근버스, 그밖에 휴게실, 수유실, 체력단련실 설치 등 (기숙사 및 통근버스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한정, 그 외에는 일반 중소기업에도 허용)
- 지원내용
-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공동통근버스 운행지원 등
- 휴게실, 수유실, 체력단련실 등에 비치되는 안마기, 운동기구, 공기정화기 등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설치 또는 비치가 필요한 각종 기구, 설비, 비품 등의 임차료 지원 등

근로자기숙사지원

- 지원내용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 지원하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단, 기숙사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 기업 당 근로자 10명 이내(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20%는 신규 채용자)
- 지원기간 : 지원조건 충족 시 기숙사 당 임차료 1년간 지원

- 지원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20%는 신규채용자)
-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하며 대체하지 못합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
- 기타 입주 및 지원조건은 지침상의 지출한도, 입주조건의 기준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

통근버스 임차지원

- 지원내용 : 산업단지 내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임차·유영 지원
- 지원한도 : 통근버스 임차비용, 최대 5억원 한도
- 지원조건: 산업단지 관리기관, 입주기업, 지자체 등 협의회 구성·운영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홈페이지: www.reis.or.kr

사업아저 지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지원 혜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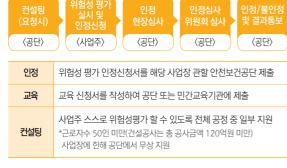
개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 사업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함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 사업의 경우 도급인 사업장과 수급인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의 상시 근로자 수로 봄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인정절차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한국안전보건공단 법정사업부(052-703-0763)

|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

개요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 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지원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 일괄 계속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지원내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 료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 보험료 징수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

-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보험료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 20%(인정유효기간 3년) • 사업주교육 인정 : 10%(인정유효기간 1년)

• 근로시간 단축: 10%(인정유효기간 2021.6.30, 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정사업부(052-703-0763)

|재해발생 사업장 적시 기술지도 |

개요

•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적시에(Right time) 재해발생 원인을 분석 하고 동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실시

지원대상

- 금년도에 사고성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은 사업장 (300인 미만)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지도 대상 선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예방감독으로 컨설팅을 요청한 사업장

지원내용

- 재해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 사업장내 주요 공정별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 아 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 사업장에서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 내용 확인·보완 ※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법적 의무사항 안내
- •사업장의 업종·설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자료 제공
- 재해예방 시설개선 비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융자·보조)을 안내, 산재예방요율제(산재보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궁금증 해소
- •위 내용을 종합한 기술지도 보고서 제공

지원결과

• 재해발생원인에 따른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재발방지대책, 재해취약분야에 대한 기술지원내용이 포함된 기술지도 보고서 제공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개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 ·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하여 안전일터 조성 및 산재예방 기여

지원대상및조건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지원 대상	-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지원 조건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 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공통요건: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신용평가결과 양호한 사업장(건설업 제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정사업부(052-703-0763)

<u>92</u>

지원내용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 같은 사업주가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과 "클린사업장 인정"을 각각 지원받을 경우라도 보조한도액은 최대 3,000만원, 고소적업 대 등 방효장치의 경우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자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자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내)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고위험성증 고위험성증 고위험성증 고위험성증		건설현장 당 최대 3천만원 (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
지원	10명 미만 (10억원 미만)	• 공단 판단금액의 70%	• 공단 판단금액의	• 공단 판단금액의 50% 3억원 미만 : 공단 판단금액의 65%
비율	10명 이상 (10억원 이상)	• 공단 판단금액의 50%	70%	• 공단 판단금액의 50%

| 산재예방시설 자금융자 |

개요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 촉진을 통한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기여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한도: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연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사업주 선정 금융기관(주거래은행) 통한 대출약정 체결 (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
- ※ 공단에서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

• 조선업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하여 조선소 원청을 통한 하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유도,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도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통해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조선업 산업재해 감소 에 기여

지원대상

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제	전국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조선업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수 포함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전국 조선업체

지원내용

- •사업장 작업특성별 차등관리 후 기술지원(패트롤 포함)
- •시스템적 인적관리체계 구축지원
- · 재해예방 네트워크 구축지원
- •조선업 안전보건 세미나(워크숍) 개최 및 교육지원

서비스재해예방

| 재해예방 기초안전지원 |

개요

• 10인 미만 기타의사업 및 운수 창고 통신업 사업장의 재해다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관련 비영리법인을 활용하여 기초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위험설비, 장소별 안전수칙 전파 및 해당 직종별 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창출

지원대상

• 10인 미만 기타의사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사업장 (건물관리업 및 2인 이상 음식업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수행요원이 2인 1조로 사업장을 방문, 위험설비·장소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안전점검
- 경고표지, 안전보건스티커 등을 위험설비·장소에 부착
- 사고사례집 등 업종, 직종별 맞춤형 안전보건자료 제공
- 간이식 안전보건 교육 또는 설명 실시

지원절차

사업공모 수행요원 교육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 · 기초 직무교육. · 위험요인의 기초 · 수행기관 공모 · 사업 모니터링 발대식 아저점검 (공단) · 접수, 심사 및 선정 ・분기 1회(일선기관) • 안전보건 스티커 · 용역대금 지급 계약체결 월 1회(수행기관) 부찬 · 상하반기 정기교육 · 수행능력 평가 실시 수행요워체결 · 안전보건자료 보급 (지역본부)

| 재해예방 집중기술지원 |

개요

• 사업장 접근성과 수용도가 높은 서비스업 관련 비영리법인을 활용하여 재해다발 시설물·설비 등에 대해 위험성평가 기법을 기반으로 한 집중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서비스업 산업재해 예방

지원대상

• 50인 미만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및 음식업 사업장 (타 업종 단체급식소 포함)

지원내용

-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시설·설비 중심의 기술지원
-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및 맞춤형 재해예방 자료 보급
-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사업 안내 등

추진절차



보거분야 민가위탁사업

개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자율적 보건관리가 미흡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민간기관에서 종합적인 보건관리기술을 실시하여 보건관리수준 향상을 통한 업무상 질병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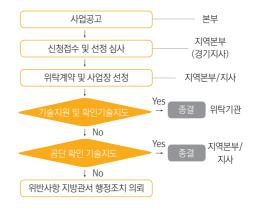
지원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 업무상 질병 취약사업장

지원내용

-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 보건관리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지원과 위험성평가 인정참여 유도
- 사업장 업무상 질병 등 재해분석 및 대책 제시, 작업환경개선 계획 수립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에 관한 기술지도
- •사업물량 30,000 개소

지원절차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건강 디딤돌 사업)

개요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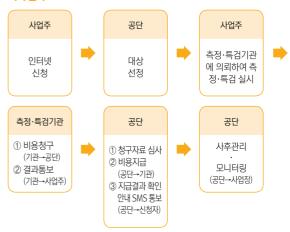
지원내용

구분	작업환경측정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신규측정사업장	•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원 (한도 금액 : 사업장 당 100만원) * 신규 측정사업장 : 17년 이후 측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건강진단비용 전역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제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기존측정사업장	• 측정비용의 70%를 지원 (한도 금액 : 사업장 당 40만원) * 한도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 디딤돌』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청 가능

처리 절차





・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1644-4544)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 운영

개요

•50인 미만 사업장 및 산업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의 보건 관리자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21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대상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 근로자 건강상담실 운영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질병)에 대한 모든 상담
-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
- 직무스트레스 상담
-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환경(작업관리)상담실 운영
- 근골격계질환예방실 운영 뇌·심혈관질환예방실 운영
- 희망사업장 단체 이동 집단상담

신청·접수

• 전국 21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연중 수시접수

V

전문인력·산학협력

- 1. 전문인력
- 2. 산학협력



V. 전문인력 · 산학협력

01 전문인력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개요

• 이공계 석·박시급 우수 연구인력 및 경력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 연구 환경 개선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세부내용

• Track1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 * 당해 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최대 1명, 최대 3년 *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3년 추가 연장 가능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지원조건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 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Track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이공계 출신의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경력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기업별 최대 1명, 최대 3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판단, 3년 추가 연장 가능 지원인력 연봉의 50% 정부지원 *연 최대 5,000만원 			
• 신청기간 중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후 부설연구소 배치-활용			
•Track3 : 공공연 연구기관 파견지원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별 1명,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 ·Track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02)3460-9130
- ·Track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3460-9167
- ·Track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86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개요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R&D 역량 제고 및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대학교
- 과학기술연구회(NST)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조건및내용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

갼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10% 이상)	지원기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3000만원 이내	80%이내	20%이상	최대 9개월

산학협력

V. 전문인력 · 산학협력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개요

• 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을 연계, 중소기업 맞춤 기술인재 양성·공급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취업 촉진 제고

※ '중소기업-전문대학-학생'간 취업조건 3자 협약 체결(취업, 현장실습 등)

지원대상

- (대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한 산학협력 역량을 갖추고 산학맞춤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 (기업)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우수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회원사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협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학생) 참여대학의 차년도 졸업예정자로 군복무를 완료한 학생

지원규모

- 전국 20개 대학, 57.6억원
- * '19년 예산 57.6억원, 대학당 3억원 내외

지원내용

• '기업'과 '학생(졸업예정)' 간 운영협약을 통해 맞춤 교육, 현장실습, 프로젝트 등 산학프로그램 비용 지원

(c.)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ms.go.kr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 시스템: www.smtech.go.kr

구분	내용
맞춤교육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으로 전공분야 심화교육을 100시간 내외 실시(최소 80시간)
현장실습	참여기업 현장에서 참여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능력 향상 및 실습, 중소기업 현장 이해 제고 등을 위한 현장실습(4주 이상) 실시
1팀-1프로젝트	교수-학생-기업이 팀이 되어 기업에서 요구하는 공정개선, 신규 아이템 개발 등의 공동프로젝트 수행(3개월 내외)

- (참여학생) 졸업대상자를 선발하여 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 교육 이수 후 혐약기업으로 취업
- (중소기업) 참여대학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맞춤 교육, 현장실습, 팀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술인력을 채용

구분	내용	
대학	학생연수비, 실습재료비, 학생활동지원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학생	협약업체 직무 맞춤교육 및 협약기업 취업 연계	
기업	산학협력프로그램 참여, 전문·고급기술인력 확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개요

•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 지원

지원규모

- 200개 특성화고, 338.5억원
- * '18년 지원현황: 200개 특성화고, 338.5억원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지원내용

- 교육지원 :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Module별로 지원
- 취업지원 : 중소기업 채용 협약 '취업맞춤반' 지원
- 산학연계지원 :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기술사관 육성사업

개요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

지원대상

- 사업단: 전문대(1개) + 특성화고(N개) 컨소시엄 사업단
- 중소기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중소기업
-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제외
- 학 생: 사업단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운영방식

• 특성화고-전문대-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고, 졸업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 연계

〈 기술사관 참여학생 진학 및 취업 경로 〉

특성화고		전문대학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교육	+ (연계)	• 전문인력 양성 • 산업기사 취득	→ (취업)	산업기능요원 제도 활용

지원내용

- 사업단(전문대 특성화고)이 현장 맞춤형 연계교육과정을 정규과정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지원
- 참여학생은 특성화고 2학년 진학 시 선발하여 대학 졸업시까지 4년간 교육을 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산업기사 취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대체복무 가능
- 중소기업은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교육과정 설계, 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에 참여 가능

구분	내용
사업단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참여학생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참여기업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6)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042-481-6875)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 유도

지원대상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학생 :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에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학생요건		
*(재교육형)	해당기업 6개월 이상(박사과정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 시 해당기업에 재직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기업에 취업해야함.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함. 단, 졸업·수료일 기준 취업해야함.	

지원규모

- 전국 47개 주관대학 69개 계약학과 및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운영비 및 등록금 등 지원 ('19년 사업비 114억원)
 - * '18년 지원현황: 학생(근로자) 1.852명

지원내용

-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백만원 지원
- •기업: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참여기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부여
 - 정책자금 신청시 금리우대(1인 0.1%)
 - 성과공유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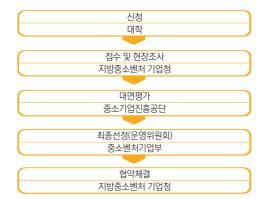
<u>110</u>

- 학생: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 전문학사·학사과정은 등록금의 85%, 석·박사과정은 65% 이내 지원
 - -채용조건형과재교육형동시채용:등록금전액지원
- 채용조건형 전문학사학위과정(영마이스터 학과) 신설

신청·접수

- 대학 : 신규 주관대학 모집공고 기간 내에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학생 및 기업 :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 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신청서 제출 * 세부 학사일정은 학교별(학과별)로 상이할수 있으니 해당 학과로 문의 요망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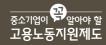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042-481-4369)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http://sanhakin.mss.go.kr → 정보마당 → 참여학과 현황 → 계약학과

VI

청년 고용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후 2년 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요건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 중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지원수준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2년간)



신청방법

• 청년 · 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



고용노동부(1350)

·청년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개요

• 중소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대상

-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휴·폐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재직중인 핵심인력*
- -(청년재직자내일채움)핵심인력 중 청년**(15~34세)
 -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 군 복무기간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지원내용

- 가입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공제 납입금
- (내일채움공제)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 기업, 정부 3자 적립
 - ·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 (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세제혜택

- 중소기업: 기업적립금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 세액공제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혜택 없음)
- •핵심인력: 5년 만기금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내일채움공제(1800-7900)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요

•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대상

- •모든업종(단,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제외)
- * 제외업종: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지원내용

•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1,100만원(중견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을 3년간(고용이 유지 될 경우·대기업은 2년) 공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개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가능
- 지원요건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 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20년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 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 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지원 예시〉

	1명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인~99인	Х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100인 이상	Х	Х	900만원	1,800만원	•••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국세청(126)

일학습병행제

개요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 직무능력표준)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학습근로자 : 취업 후 일정시간 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근로자(4대 보험 의무적 가입)

기업규모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대상
- *50인 미만이라도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와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업종 특성상 상시근로자가 많지 않은 경우 가능

실시유형

단독기업형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개별 기업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 형태(20인 이상)

지원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비와 훈련비 지원
- 학습기업에서 소요되는 훈련비(S-OJT, OFF-JT),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및 학습근로자 지원금(월 40만원 한도) 등 지원
- 정부 · 산업계가 인정하는 도제자격(수료증명) 부여
- (기타)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학습도구 개발,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육성 (폴리텍 · 한기대 · 산업별협의체 공동 지원)
 - ※ 소요비용 지원은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형'이 상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확인 필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개요

 청년에게 중소 · 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 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대상

- 만15~34세 청년(대학생 참여가능)을 단기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 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참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가능
- *근로조건 : 주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멘토 지정, 업무지도 등실시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 (최대 30명 상한)
- * 단,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60%까지 가능(최 대 30명 상한)
- *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수준)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

지원절차

- ① (참여신청) 기업이 "워크넷-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② (지원협약)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 운영기관-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 ③ (청년 채용) 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 ④ (채용자 명단 통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 기관에 제출
- ⑤ (지원금 신청)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

첫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요

•청년층에게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근무 또는 연관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청년민 간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 만15~34세 청년을 IT활용 가능한 직무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가능
- *근로조건: 주15시간이상, 최저임금이상지급, 4대보험가입등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참여 불가하나, 졸업예정자는 가능

지원내용

- (대상)채용계획 내에서 '20, 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6만명 목표)
- * 예) '20, 12월 채용자의 경우 21년도에도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 노무비를 추가 지원

〈지급예시〉

월보수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 *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 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 ▲ 채용 필요성 ▲ 직무내용 ▲ 예상 결과물
- ▲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 · 승인 후 채용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한도	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30명)	최대 2배 (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예) 10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 시 20명 50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 시 60명 3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보법 시행령 제 40조의 2 준용)

지원절차

- ①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②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 *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③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 *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 지원금 신청)
- ④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⑤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반법

•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121

• (청년) 지역 관함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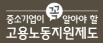
·고용노동부(1350)

KBIZ

VII

여성·중장년·장애인 고용 지원

여성 고용 지원
 중장년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 지원



VII. 여성 · 중장년 · 장애인 고용 지원

여성 고용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근로자 지원)

최근 변경된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3일 + 무급 2일 → 유급 10일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단축시간: 일 2~5시간(주10~25시간) → 일1~5시간(주5~25시간)
 - 사용기간: 최대 1년 → 2년
 - 임금지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③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허용
- ④ 가족돌봄휴가 신설: 연 10일, 1일 단위로 사용가능
 - (* 재난 상황 시엔 최대 연 2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 25일)
-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 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 (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 장하여도 미부여시 사업주 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 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사산한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기를 부여해야 함 *임신 11주 이내 : 5일, 임신 12~15주 : 10일, 임신 16주~21주 : 30일, 임신 22~27주 : 60일, 임신 28주 이상 : 90일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414 (001	

줄산 전후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유산 사산 휴가	상동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 최대 월 월 8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8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80만원)
급여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80만원)

- ① 근로기준법의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 사용해야 함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
 - : 첫 3月 150만원, 이후 9月 120만원(150x3+9x120=1.530만원)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지원내용: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방법 사용 가능 · 기간: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사용).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지원요건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 ③ 같은 자녀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지원내용: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 지원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지원내용 : 10일의 유급휴가

*급여 지원요건: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사하여 180일 이상

② 휴기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연속으로 사용할 필요 없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음

구분	1차 사용자(주로 어머니)	2차 사용자(주로 아버지)
기간 최대 1년		1년
지원금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제도(사업주 지원)

개요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인력 활용을 지워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 지원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육아휴직 부여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1년 한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③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 용한 경우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 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워내용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 인력 사용 개월 수 에 다음 금액을 곱하여 산정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개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 육아부담 완화 및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촉진

지원내용

구분	기	준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및비율
대규모 기업	단독 공동		시설전환비	3억원	• 소요비용의 60%
(일반)				6억원	* 소요비용의 80%
			시설전환비	4억원	
	단	독	시설건립비	10억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상생형 :			시설매입비	20억원	• 소요비용의 90%
대기업 포함	공동	5미만		1억원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가능)	00	5이상			
	공	통			
우선지원대상 기업 (대규모기업)	공통		교재교구비	7천만원 (5천만원)	• 대)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
			교체비	3천만원 (3천만원)	• 중)소요비용의 90%

^{*}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25, 부산 051-320-8182~7, 대전 042-870-9111~6) ·근로복지공단(052-704-7354)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개요

-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 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사업
- *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장비 포함): 모유시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사워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시설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융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시설건립, 매입, 임차 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 용도 :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 한도 : 최고 7억원(공동 9억원)
여성고용 친화시설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 ·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 인호 - 의교 / 작년(등등 9학년) • 이율 : 연 2,0%(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0%)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환경개선

개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약정한 기업이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환경개선사업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거나,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기업
-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창업한 기업 (창업 후 1년 이내)
-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지원내용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약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친화적 환경개선 비용 지원
- •사업장 당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e새일시스템 홈페이지 : saeil.mogef.go.kr

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제혜택

개요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취업한 경력단절여성 당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용부담 완화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촉진

지원내용

종류(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수혜자	수혜내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2년간 지급 인건비의 30% 상당액
세액공제(법 제29조의3)	중소기업	세액공제(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	
(법 제30조)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등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의 100%를 세액공제(2년간)

• 세제혜택에 적용하는 경력단절여성의 범위: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 임신·출산·육아의 시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에 있는 여성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개요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운영

지원대상

•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지원내용

직업상담	구직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별·생애주기별 1:1 맞춤형 취업상담과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메이킹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기업 맞춤형 과정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취업역량을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여성인턴제	내일여성인턴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 제공 결혼이민여성인턴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직장 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인턴급여의 일부 (월 60만원) 지원,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 및 기업 각 1회 취업장려금(60만원) 지원
취·창업연계 및사후관리	취업한 경력단절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장 적응교육, 고충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친화적 기업 분 위기를 조성하도록 기업체 환경개선 지원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직장문화 개선 교육·컨설팅,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등 지원



・새일센터(1544-119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www.mogef.go.kr

여성 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개요

• 임신·출산·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매칭하여, 경력단절 여성과학 기술인이 R&D 분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개인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 또는 미취업 중인 여성
- 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으로, 경력단절 여성과학 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 정부출연(투자)연구소,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연구소 등
-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기관대응자금 필수
- 채용 기초지원(퇴직금 및 4대보험) 필수

지원내용

- 개인
- 복귀준비: 예비복귀자 재취업 준비교육, 취업역량진단, 이력서 클리닉 등
- 경력복귀: 경력복귀 여성 연구원의 연구개발 참여지원, 연구역량 강화 교육 등
- 경력유지: 경력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경력관리 상담 및 집단코칭 등
- 기관
- 경력복귀 연구자의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지원
- 1인당 2,200만원 내외(12개월) 지원, 최대 3년

02

중장년 고용 지원

VII. 여성 · 중장년 · 장애인 고용 지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자금융자 지원사업

개요

• 장년 고용 친화적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 융자

융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사업주

용자금용도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

지원내용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원 한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융자금 1억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고용조건
대출금리	• 연 1%

신청및심사절차

•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14개 지사 (연중 수시 신청)

• 심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개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및요건

-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개념	예시			
신 중 년 적 합 직 무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설계를 목적으로, 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추천 직무 및 도전 가능 직무	오랜 직업생활을 통한 노하우를 활용 → (예시) 직무교육강사, 경영 컨설턴트, 창업 컨설턴트 등 신중년 및 노년층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경험과 연륜이 있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신중년이 제공 → (예시) 노노케어매니저, 웰다잉 강사, 노년플래너, 전직지원전문가 등 • 맞벌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공동체에서 수요가 많은 사회서비스 제공 → (예시) 주거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육아도우미, 임신출산육이전문가 등			

• 지원요건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 보험 가입
- 무기계약 체결*
-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지·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6.7

·고용노동부(135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개요

•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20년까지 한시 지원)
- 지원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27만원 지원
- *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로 지원
- 지원요건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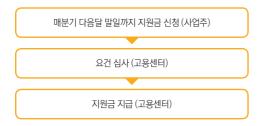
업종별	지원 기준율	업종별	지원 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6%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광업(05~08)	7%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그 밖의 업종	2%
	·사업시설 경비 및	1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기타업종		7%

※ 지원금 신청 전 3개월·신청 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하며, 일용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300인 미만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 등)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산정시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과의 관계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실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산정시 제외되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 여 대상여부를 확정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사업 추진체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개요

• 중소 ·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 지워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등
 - 지원요건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 도입한 사업주
 - * 계속고용제도란?
 - ①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②정년 폐지(정년폐지)
 - ③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 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지원수준

• 지원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기간: 최대 2년

사업 추진체계



6.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03

장애인 고용 지원

VII. 여성 · 중장년 · 장애인 고용 지원

고용장려금제도

개요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도모 및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 (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 : 3.1%, 공공 : 3.4%)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비고
지급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 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지급단가와 웤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융자

개요

•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용지금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내용 및 절차

지원내용	• 작업·편의·부대시설 투자비 전액을 사업주당 15억원 한도 지원 ※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 고용 조건
융자기간 및금리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연 1%

신청안내

- 신청시기: 연중수시(지사별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

시설장비 무상지원

개요

•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대상시설	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4천만원 한도	
편의시설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 1천만원 이하 전액 지원 • 1천만원 초과 1천만원 + 초과금액의 2/3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지원하도

- 한 사업주당 3억원 한도 내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이내 (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 이내)
- * 무상지원금 지급 신청시 사후관리기관(2년) 동안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의무제출

고용관리 비용지원

개요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고용하여 자격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입·배치하여 작업 지도 실시한 사업주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정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기준 및 내용

지급요건	지급액
i)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5명까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ii)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업지도비용 대상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 (최저임금 미만은 1/2)

지원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031-728-7065)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안정부(031-728-7356)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u>142</u>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제도

개요

• 무료직업소개사업 수행 기관이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

지원내용

갼	지급요건	지급액
ZZIMIOI	1. 취업알선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중증장애인	2. 위 1호 해당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은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Z TIMIOI	1. 취업알선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중증장애인 外 장애인	2. 위 1호 해당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추가지원)

지원절차

지원신청 (사업주) 신청 및 구비서류 검토 알선 사업체, 취업자 유선 및 방문 통한 실사

지원금 지급 결정 및 통지

15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제도

개요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 조성 및 장애인중심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신청 제한

-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설립 ·운영 사업주
- ②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무상지원금 지급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

지원내용및한도

지원 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 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단, 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투자금액과 공단 산정 금액 중 적은금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지원한도 및 조건

-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 필요
- 무상지원금을 모두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고용계획 제출인원을 전부 고용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충족 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의 다음달부터 7년간 유지 하여야 하며, 반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c)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031-728-7152)・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031-728-7101)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MEMO

- MEMO

KBIZ

KBIZ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김기문

발행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http://www.kbiz.or.kr

제 작 (주)옵스웨이

책자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